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461
----------	------------

제안년월일 : 1999년 4월 20일

제 안 자 :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황의형

1. 제안이유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있는 것을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의회 의원을 동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의회의원도 참여토록 함. (안 제4조제2항)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 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의회 의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비 고
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⑤(생략)	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원안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며 6~9명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 의회의 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지방 의회의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⑤(원안과 같음)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비 고
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⑤(생략)	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원안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 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 의회의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⑤(원안과 같음)	